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23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